



표준번호 : DSGP-0400

상위표준 : 해당없음

작성부서 (안전팀)
페이지수 (1/35)

동서기공	●
동 회 산 기	
알 테 크 노 메 탈	
동 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이 력 사 항

REV.NO.	제·개정일자	개 정 사 유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일 자	일 자	일 자
0	1995.02.07.	제정			
1	1996.04.01	업무의 표준화	박진암		
2	1996.06.01	품질번호부여 체계변경	박진암		
3	2021.08.13.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변경	황인우		
4	2022.12.15.	전면 개정	손석범		
5					
6					
7					
8					
9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35

I.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동서기공(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따르며, 필요 시 별도의 사내 규정, 매뉴얼, 절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킨 사고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업무를 말한다.
8. “보건관리”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업무를 말한다.
9.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 사고 등을 포함한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3/35

안전보건관리규정

10.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1.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4. “부상 재해”란 중대 재해를 제외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말한다.
15.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16.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 ① 사업주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하고,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사업주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 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회사에 적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수	4/35

제5조 [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나.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2. 생산부서장
 - 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생산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팀장
 -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
 -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
 -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나.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6조 [안전보건 활동계획 수립 및 실천]

- ① 임직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 및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장의 구성원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12월 사업계획 작성 시 수립하고, 다음해 1년간 실시한다.
- ③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기, 대상자
 2. 안전검사 대상 설비 및 시기
 3. 작업환경측정
 4. 근로자 건강검진
 5. 협의체 등 회의의 종류 및 시기
 6. 현장 점검 종류 및 시기
 7. 위험성평가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5/35

8.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사항 등

제7조 [도급사업 재해 예방계획 수립]

- ①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 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 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8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 ① 회사는 제7조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9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①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업체 사업주를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 운영 사항의 통보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6/35

II. 조직과 직무

제1절 안전보건위원회 등 조직

제10조 [위원회 등 조직구성의 원칙]

- ① 회사의 안전보건업무수행을 조사, 협의 및 심의 등을 자문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둔다.
- ②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및 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①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설치 기준
 1.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를 참조
- ③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가. 근로자대표
 -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라.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가. 각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7/35

나. 안전팀장

다. 각 공장 안전관리자

라. 각 공장 보건관리자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촉하는 임직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결정이 잇는경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가. 사내 게시판

나. 회사 자체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다. SNS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2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

① 본 규정 제8조에 따라 회사 내에 수급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수급 또는 관계수급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8/35

사업장일 때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체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
2.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수급사업의 사업주 전원

④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⑤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 구성원이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
2.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 발생 위험의 대피 방법
4. 순회 점검에 관한 사항
5. 합동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사내 수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7.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8.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
9.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2절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 ①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 ② 안전보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부서를 둘 경우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환경·가스·전기·소방·교통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 관계자가 같은 조직의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한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9/35

- ③ 본사 및 사업소 등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하는 부서(팀)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양식]현장 조직도와 같이 작성하다. 다만, 하수급사업장은 고객사 내규에 따른 양식을 준용할 수 있다.
- ⑤ 사업장 내에 수급업체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사업주 간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지휘·감독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감독자]

- ① 회사의 경영조직에서 생산 또는 시공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부서(팀) 단위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10/35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회사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 시작 전 점검 및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에 보고한다.
10.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조 [안전관리자]

- 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증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현장의 공사금액에 대비하여 선임 또는 증원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을 따르며,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른다.
-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해야 하는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 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11/35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 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보건관리자]

- ①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산업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증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현장의 공사금액에 대비하여 선임 또는 증원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따르며,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을 따른다.
- ③ 보건관리자를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해야 하는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산업 보건위의 직무(보건관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12/35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보건관리를 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건의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13/35

9.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작업담당자]

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담당자로 지정한다.

1. 자격소지자

가.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나. 위험물, 소방안전관리 등 법정 선임자

2. 경력자(3개월 이상)

가. 화학 설비와 그 부속 설비 사용 작업

나. 전기 작업(해당 전압이 50v 이상 또는 전기에너지가 250VA 이상으로 한정)

다. 중량물의 취급 작업

② 작업지휘자는 제1항의 각호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근로자의 교육 및 작업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2. 이 규정 제22조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수급인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발파작업, 화재 발생 및 토석의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한 경보운영과 사내하도급업체 및 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 운영 사항의 통보

7.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8.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14/35

갖추어 두어야 한다.

Ⅲ. 안전·보건교육

제21조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 ① 안전팀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1. 근로자 정기교육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3. 채용 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 특별교육
- ② 수립된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SNS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22조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 : 모든 근로자
2. 교육 시기 및 시간 : 매 분기 6시간 이상
3. 교육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4. 교육내용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근로자(관리감독자 제외)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15/35

제23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2. 교육 시기 및 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3. 교육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교육기관
4. 교육내용
 -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나. 표준 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채용 시 교육]

채용 시 교육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 : 신규 채용자
2. 교육 시기 및 시간
 - 가. 일용근로자는 작업 투입 전 1시간 이상
 - 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3. 교육담당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4. 교육내용
 - 가. 사업장 소개
 - 나.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라.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마.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대상화학 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16/35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25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 시기 및 시간
 - 가. 일용근로자는 작업 투입 전 1시간 이상
 - 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3. 교육담당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4. 교육내용
 - 가. 작업내용 변경된 분야(부서)의 소개
 - 나.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라.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마.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대상화학 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26조 [특별교육]

특별교육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종사하는 자
2. 교육 시기 및 시간
 - 가. 종사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나. 단기작업, 간헐작업 및 일용근로자 : 작업 시작 전 2시간 이상
3. 교육담당자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4.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중
 - 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나. 구조작업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17/35

- 다.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 라.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마. 기타 사내 공정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

제27조 [직무교육]

직무교육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2. 교육 시기 및 시간

구분	신규		보수	
	교육 시기	교육 시간	교육 시기	교육 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후 매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3. 교육담당자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
4.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름
5.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제출

제28조 [위탁교육 등]

- 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교육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위탁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②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록·보존]

- ①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교육 강사)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참석자 명부, 교안 등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직무교육, 온라인 교육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수료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수	18/35

료증(교육 확인서)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관련 부서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IV. 작업장 안전관리

제30조 [안전·보건 순찰 및 점검]

-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점검 및 순찰 중 확인된 부적합 사항 또는 문제점 및 개선조치 결과를 안전 점검표에 기록·보관하고, 사내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주간 안전회의 시 별도 보고한다.
- ③ 순찰 및 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기	점검자	비고
일일점검	매일	안전/보건관리자	
순회점검	2일 1회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합동점검	분기 1회	노조위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대표, 안전관리자 등	별도 보고서 작성
TFT점검	발생 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사내 보유설비 중 사회적 이슈(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점검	발생 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신규 설비 도입 시

- ④ 점검 및 순찰 결과 안전보건상 미흡하거나, 부적합사항 발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을 실시한다.
- ⑤ 점검 및 순찰과 관련하여 업무절차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① 기계·기구 및 설비에 양도, 대여, 설치 및 사용 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합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문힘 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 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 기계의 물림 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4. 주요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수	19/35

안전보건관리규정

기계·기구명	방호조치 내용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정장치
크레인 및 호이스트	과부하 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정장치
승강기 및 리프트	인터락스위치, 권과방지장치, 추락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장치
산업용 로봇	인터락스위치, 안전펜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장전장치
연삭기	덮개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장치
기타	그 밖의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장치

5.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안전보건공단의 성능검사를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사용해야 한다.

② 작업자는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후 해체할 것

다만, 자동화 라인관련 오류알람 등에 의한 점검 시 인터락 해제는 제외한다.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복하고,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할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할 것

③ 안전관리자는 위 각 호의 신고 등이 있을 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원상복귀,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장치는 해당 설비의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관리하며, 관계 근로자 외의 자가 인위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전기설비 안전]

①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된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된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0/35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m, 수평 거리 1.5m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 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③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 ④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 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 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대상 기기가 충전 여부 확인
 6.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 ⑥ 정전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 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 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⑦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 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할 때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구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1/35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 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할 때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 ⑧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활선 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4.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5. 충전 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3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한다.
- ④ 의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을 금한다.

제34조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등]

- ① 회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유해·위험 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수	22/35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 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④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⑤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용도, 사용 장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를 준용한다.
-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6조 [표준작업 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 ① 생산팀장은 사업장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7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수	23/35

- ① 사업장 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③ 사업장의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와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8조 [작업중지 등]

- ①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원을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9조 [안전보건진단]

-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임회시켜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① 사업장의 각종 사고 및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설비 유지 및 보수, 각종 점검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사용 시기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은 별도의 기준으로 수립가능 한다.
- ③ 예산은 매년 12월 사업계획 수립 시 편성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 ④ 예산 사용 실적은 반기 1회 집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⑤ 예산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추가 예산을 품의한다.

제41조 [교통재해 예방]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4/35

- ① 회사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10km/h 이하)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 ③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2.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3. 전기작업(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5. 기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제1호·제2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작업에 대하여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및 사내 물류 이송용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V. 작업장 보건관리

제43조 [작업환경측정]

-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 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 실시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 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5/35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③ 작업환경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각종 집체 교육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④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 ⑧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근로자 건강진단]

- ①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자 및 실시 주기 등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대상 등	주기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	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특수 건강 진단	정기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배치 후 6개월 이내 정기 : 1년 1회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배치 전
	수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사업주 필요 시
	임시	중독,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명령에 따라 실시	명령서 시달 시
기타	기타 회사(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 건강진단	사업주 필요 시	

※사무직 종사자 중 공장과 같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사무직과 동일하게 적용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6/35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건강진단 주관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 일정, 검진대상자, 검진 기관 및 건강진단 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건강진단 실시 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작업 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 1. 건강진단기관
 - 2. 산업보건의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 ⑨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⑩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7/35

-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 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 [보호구]

- ① 회사는 작업환경 및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에 대하여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회사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방진 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사내 규정을 따른다.
- ③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 ① 회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8/35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애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 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 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과 관련된 질병
- ③ 회사는 제②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 | |
|--------------------|------------------|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유해성·위험성 |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조치 요령 |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 7. 취급 및 저장 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13. 폐기 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15. 법적 규제 현황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회사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저장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거나,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회사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29/35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 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회사에서 취급·저장 등을 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제50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 ① 근골격계 부담 작업(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 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경영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 비상시 대비,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1조 [비상조치계획]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30/35

-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 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등

제52조 [피난 및 대응 교육·훈련 등]

- ① 회사의 실정에 맞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시나리오별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② 시나리오별 피난 및 대응 교육·훈련은 안전보건 활동계획에 반영한다.
- ③ 회사는 피난 및 대응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비상 연락체계는 해당 사업장의 내부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4조 [사고조사 시 처리절차]

-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안전팀(또는 관리감독자 포함)은 재해발생 접수 즉시 현장에 출두하여 재해자 상태확인, 병원이송, 2차 재해 발생 차단 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안전팀을 주축으로 합동 사고 조사반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 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31/35

제55조 [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56조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① 안전팀(또는 관리감독자 포함)은 재해발생 접수 즉시 현장에 출두하여 재해자 상태, 현장 사진(동영상) 촬영, 관련 서류 확보 및 관련자 면담을 실시한다.
- ② 안전팀은 발생한 재해의 경중을 판단하여 객관적 원인 분석 및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팀, 설비 유관부서, 사고 해당부서의 관리자로 구성된 합동 사고 조사반을 별도 소집 및 운영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 ③ 다만, 재해의 경중에 따라 재해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해당 부서장은 안전팀과 별도로 자체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발생보고서 작성하여 안전팀에 제출한다.
- ⑤ 안전팀은 안전교육, SNS 등을 통해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보고)

- ① 재해가 발생한 부서장은 재해발생 10일 이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재해보고서 작성 및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안전팀에 제출한다.

1. 재해보고서	2. 경위서(본인, 조/반/직장, 파트/팀장)
3. 대책이행 결과보고서	4. 관련 사진
5. LAY-OUT	6. 진단서
- ② 안전팀은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행정기관	비고
중대재해발생보고서(제조업)	중대재해 발생 후 24시간 이내	관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재해 발생 후 30일 이내		

-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안전보건관리규정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32/35

제58조 [재해 발생 현황분석 등]

- ① 안전팀장은 정기적으로 재해 발생 누적현황 및 처리비용,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분석하고, 다발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② 안전팀은 매년 12월 당해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안전대책, 개선비용 등을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재해분석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2.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VII. 위험성평가

제59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등에 관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 [위험성평가 실시]

-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 [위험성평가 주기]

-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33/35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2조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Ⅷ. 자율안전활동

제63조 [자율안전활동]

- ① 회사의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도록 자율안전활동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의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재해운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4조 [위험요인 개선활동 등]

- ① 회사는 사내 위험요인을 개선 제안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험요인 개선활동을 위한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안 전	표 준 번 호	DSGP-040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 개 정 일 자	2022.12.15.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수	34/35

IX. 상 벌

제65조 [상벌]

① 포상

1. 무재해 포상

가. 각 공장별 상/하반기 재해 목표 이하 유지 시, 생산부서에 한하여 근로자 개인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포상금 지급 대상은 관리직을 제외한 직/간접 생산직에 한하여 적용

2. 관리감독 우수자 포상

각 생산부서 직/반/조장 중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한하여 개별 포상금 지급

3. 안전 우수 사원 포상

각 생산부서 사원 중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한하여 개별 포상금 지급

4. 무재해 포상, 관리감독 우수자 포상, 안전 우수 사원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 대상, 지급 시기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5. 기타 안전 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등에 대하여 각종 포상 시 우선 추천 할 수 있다.

② 처벌

1. 안전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거나, 미준수한 자에 대해서 경고장을 발부 할 수 있다.

가. 위험장소 출입 시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한 자

나.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을 미준수한 자

다. 안전수칙을 미준수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자

2. 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 또는 산업사고를 언론매체에 유포, 인터넷에 게시 또는 대외적인 업무 차질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나. 산업재해 또는 산업사고로 인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법출두 명령 등을 받거나 발주처로부터 불이익(금전적 손실 등)을 받게 한 자

다. 위험작업 장소에 안전방호장치, 울타리 등을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해체하거나 파손시킨 자 또는 그로 인해 타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사고를 유발시킨 자

라. 사내 안전수칙 미준수하여 3회 이상 경고장이 발부된 자

마.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산업재해관련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바.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X.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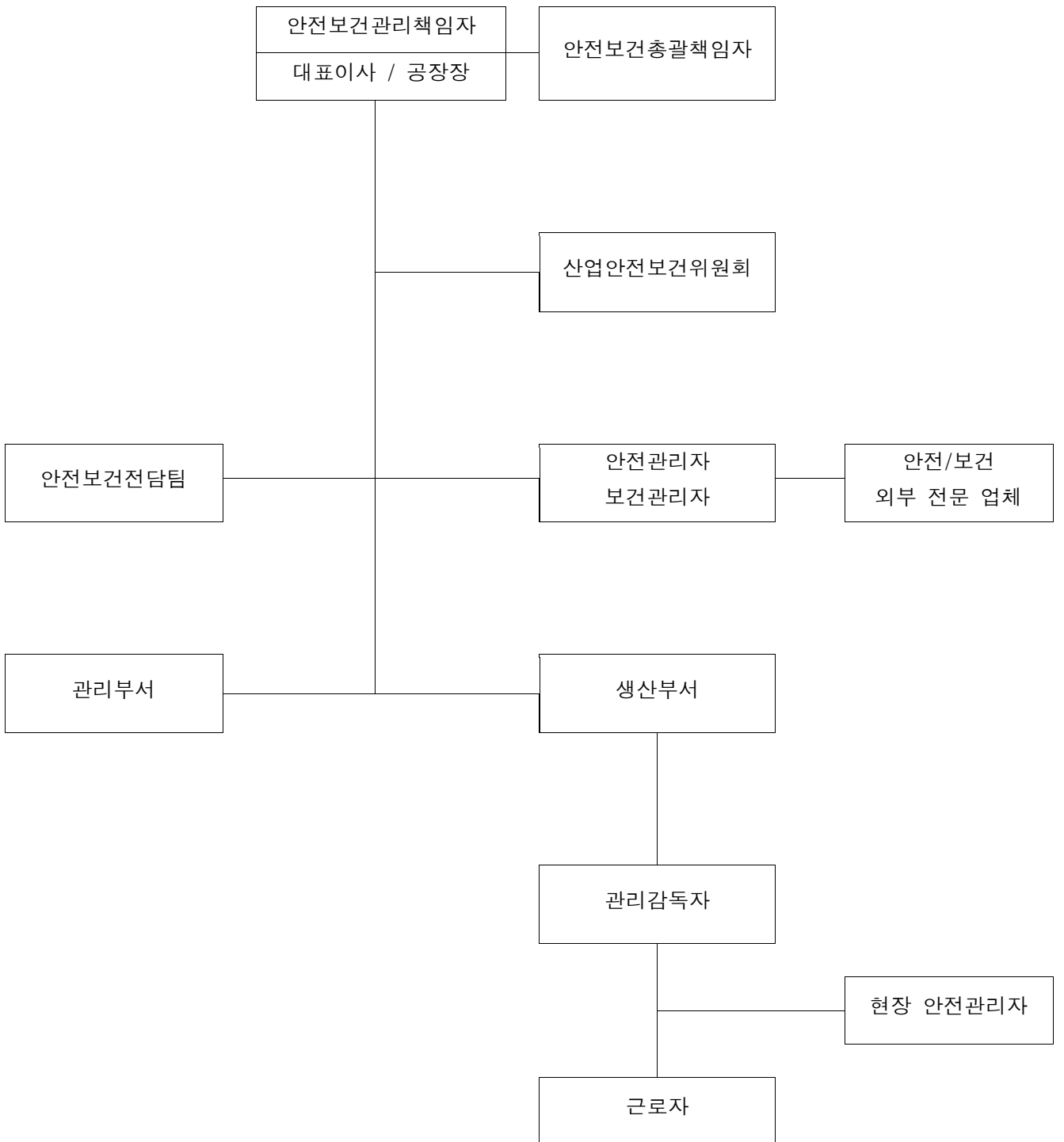
제66조 [문서의 기록 및 관리]

- ① 각종 문서는 종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종이 문서는 관련 항목별 철하여 관리한다.
- ② 각종 문서 등은 사무실에 1년간 보관하고, 1년 경과 시 문서고로 이관하여 보존기한까지 관리한다.
- ③ 본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나 보존 기한이 명시된 서류는 해당 기한동안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부 칙(2022.12.15.)

- ①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보건관리 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참석위원	사용자측 위원			근로자측 위원	
	위원장			근로자대표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안전관리자			위원	
	보건관리자			위원	
회의 및 의결사항					
기타 사항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 당	검 토	승인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안전 교육(매분기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교육			
교육일시				
교육대상	합 계	소속 및 참석자		비고
	명			
교 육 주 제 및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책	교육실시장소	비 고
특이사항				

<참석자 명단>

N0	부 서	성 명	서 명	N0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재해보고서

발생부서	작성	검 토	승인
총무부	검 토	승인	

1.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요일	일기	
2. 장 소	(작성자 :					
3. 피 해	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주 소				학 력	
	경 력		직 종		입 사 일 자	
	장 소				사 고 횟 수	
4. 목 격 자	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5. 가 해 자	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6. 피해정도	인적상해정도				치 료 비	
	물적피해정도				금 액	
	언 제		어디서		누 가	
7. 사 고 내 용 (피해자 진술)	무엇을 언제 왜					
	약도	재해장소 LAY OUT 상에 표기, 재해기계 및 위치 사진첨부				
재 해 예방조치						
8. 원 인	직 접				간 접	
9. 대 책						
10. 대책일정						
11. 응 급 조 치 사 항						
치료관계 (예상)	통원 일			입원 일		
재 해 자					(인)	사후관리:
안전관리자					(인)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경위서

[안전 사고] 경 위 서

결 재	작성	검 토	승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작성 일	
-----	--	-----	--	-----	--	------	--

1. 연 제 :

2. 어 디 서 :

3. 누 가 :

4. 무 엇 을 :

5. 왜 :

6. 어 땀 게 :

7. 대 책 :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책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사고] 목격자 진술서

검 재	작성	검 토	승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작 성 일	
-----	--	-----	--	-----	--	-------	--

1. 언 제 :

2. 어 디 서 :

3. 누 가 :

4. 무 엇 을 :

5. 왜 :

6. 어 땀 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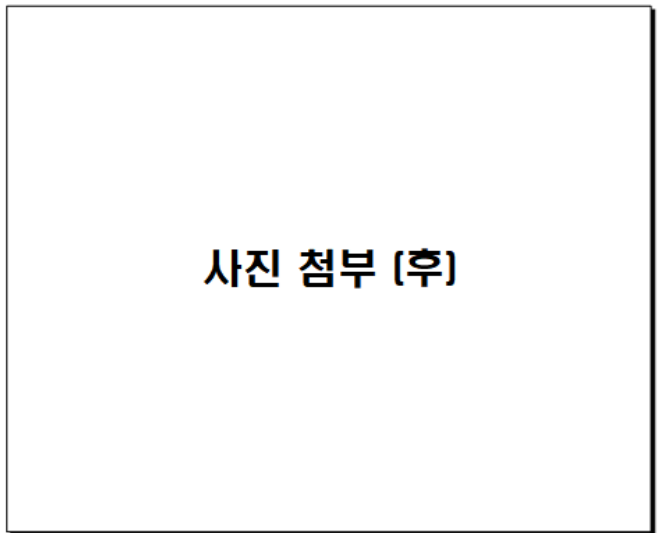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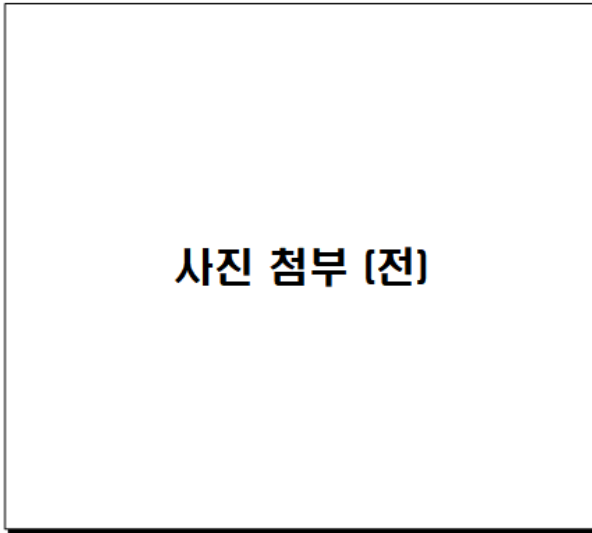
** 목격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이행 결과 보고	결	작성	검 토	승 인
	재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작 성 일	
-----	--	-----	--	-----	------	-------	--

1. 사고경위(상세히 작성)

2. 이행 내용(교육, 설비개선 등)



3. 사고 라인 해당 인원 교육 서명

소속	성명	서명

* 안전 교육시 필히 교육 확인 서명(첨부자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교육 서명란이 부족시 별첨으로 추가 바랍니다.

안전사고 관련 사진(현장사진)

사진		
내용		
사진		
내용		
사진		
내용		

- 안전사고 장소(LAY OUT)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지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 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질병 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III. 재해 발생 개 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IV. 재발 방지 계획	
-----------------------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문서번호: 20 . .

수 신:

발 신: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원청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하청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해정도
						사망()명 부상()명 (치료예상기간: 월)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행정조치
				<input type="checkbox"/> 시정지시 <input type="checkbox"/> 사용중지 <input type="checkbox"/> 작업중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4. 재해발생 내용 및 경위